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준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88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 박준태·조지연·고동진

구자근 · 김승수 · 조배숙

김장겸 • 장동혁 • 김상욱

송언석 • 곽규택 • 박성민

최보윤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,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, 2022년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가 15세미만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.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는바.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·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및 학교,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

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32조).

법률 제 호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2조 단서 중 "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
- 2. 15세미만자가 재난·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·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7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사고
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第732條(15歳未滿者等에 對한 契 第732條(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 約의 禁止) 15歲未滿者, 心神喪 約의 禁止) -----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 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-----<u>다음</u> 각 호 無效로 한다. 다만, 심신박약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 <u>35조의3에 따른 단</u>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 <신 설> 1.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 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2. 15세미만자가 재난・감염병 <신 설>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·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 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